

도서관 저작권보상에 대한 집단인식 비교연구

Comparative analysis of group cognizance regarding application of copyright laws in library

김 포 옥*, 이 진 숙**

Po-Ok Kim, Jin-Suk Lee

차 례

- | | |
|-------------------|--------|
| 1. 서 론 | 4. 결론 |
| 2. 도서관에서의 저작권법 개요 | • 참고문헌 |
| 3. 저작권보상에 대한 인식조사 |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이라는 공간 내에서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지적재산권의 제한사항이 어떻게 인식되고 실행되어지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디지털 원문 자료를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원문 자료의 이용실태를 통해서 저촉성에 관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저자집단과 사서 및 이용자등의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조사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집단별로 저작권법의 인식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상관 분석하였다. 아울러 조사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미래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키 워 드

저작권법, 저작권인식, 저작권 보상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 pook-kim@hanmail.net)

**전북 익산 영등중학교 사서교사

(Librarian, Yeongdeong Secondary School, Iksan, Chonbuk)

•논문접수일자 : 2004년 8월 24일

•제재확정일자 : 2004년 9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considering the many disputes in today's society centered around copyrights, aimed at analyzing and investiga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copyright laws in library, whether where is a reach or not, and also the procedures and cognitive degrees in copying and transmission of copyrights materials. Especially the usage of the digital resources built by major domestic libraries have been looked at, and how they reveal the cognitive degree of copyright laws toward various social strata have been analyzed. Research subjects in each social stratum were firstly classified, which centered around university library users, authors as well as librarians in each university library public access post, then the difference of understanding toward copyright laws between each of these 3 groups was analyzed, and also at the same time the problems in usage authorization procedures of copyrighted materials in library were analyzed, so that the solutions to such problems can be found.

KEYWORDS

copyright laws, copyright's recognition, copyright compensation

1. 서론

1.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정보통신의 분야가 발전됨으로써 이용자가 요구하는 지식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정보자료를 축적하고 수집하는 방법 또한 다양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자료들이 디지털화되어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장소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단은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사회에 유익성은 주고 있으나, 반대로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부당성과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에서는 이들의 창작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시행이 강조되었고, 국제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시행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저작권법은 점점 현실적이고 구체화되어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저작권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저작권법의 저축성이 가장 많이 해당되는 디지털 원문자료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관심과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연구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법규내용이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법규상의 내용들은 사회 각 계층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가를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조사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미래 우리 사회에 저작권법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1.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및 그 외 인터뷰 실시와 각종의 통신방법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지 조사의 배부시기는 2003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1개월 기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저작권법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대상은 사회 각 계층 속에서 이용자, 저자, 사서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이용자조사의 경우,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총 685통의 E mail을 발송하여 345명(51.3%)의 회수율을 얻었으며, 저작자 조사에서는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재직중인 교수님들을 선정대상으로, 총 330통의 E mail을 발송하여 164명(49.7%)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사서 조사의 경우는 전국의 공공 및 대학도서관의 현직 열람부서의 사서들을 주대상으로 총 260

통을 발송하여 149명(51%)의 응답률을 얻어내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통계처리 방법으로는 SPSS 10.0 을 사용하여 분석처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내용에서는 도서관내에서 적용되는 저작권 법규의 범위와 자료의 복제시 저작권자의 사전이용의 허락이나 그에 대한 보상금 제도 등의 관련사항들이 도서관의 디지털 원문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항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한다. 아울러 저작재산권법 조항 제 6절 제 28조 저작권법 제6절 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제시된 도서관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제한사항과 함께 저작권 권리인정의 인지도나, 이용요금의 적정가격의 수준과 내용으로서, 사회 각 계층을 중심으로 집단별 상호간의 인식관계를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1.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원문자료에 국한하여 도서관 이용의 실태를 중심으로 법규상에 저촉되는 인식만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법규상 기타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자료로서 남겨두고자 한다.

또한 설문조사의 선정대상에서 사회 각 계층 중에서 이용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작자는 대학교수만을 중심으로, 또한 도서관 사서직의 선정은 열람부서의 직원만을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본 연구내용의 제한점으로 지적된다.

2. 도서관에서의 저작권법 개요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1 도서관에서의 저작재산권 적용법규의 분석

2. 1. 1 저작재산권의 개념 및 제한범위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범위 중에서 재산권 행사에서 제한사항이 성립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사항이 범위로 지정되고 있다.

정리해 보면 ① 재판결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引用),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私的利用)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點字)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錄音)·녹화(錄畫),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과 같은 경우로서, 이들은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要件)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 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항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중에서도 도서관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복제권과 전송권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검토

2. 1. 2 복제권의 적용범위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저작권법 제28조는 도서관 등에서 복제물의 제공을 위한 규정으로 개정안이 2003년 4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강희일 2003).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은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먼저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그리고 영리의 목적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한 특수도서관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의 목적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 또는 그 외의 자료의 보존과 대출, 기타 복사와 전송의 이용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개인이 설립한 도서관은 아직 법률적으로 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도서관 등에 원본이 보관된 도서 등에 한하여, 임의로 도서관 시설 밖에서 구하여 복제하여서도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라도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시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제28조 4항에서는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며, 그 보상금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와 도서관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혜택을 받지 않고도, 공탁을 한 다음 마음대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성립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작재산권자가 일일이 이용자를 찾아서 권리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용자들을 알지 못할 경우 저작권자의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이용자를 위한 우선 편의위주의 입장에서 불법 사용의 우려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1.3 전송권의 적용범위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제18조 2에 온라인 상의 저작물 송신에 대한 권리인 '전송권'을 신설한 바 있다. 제2조 9의 2에 규정한 바,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정경희 2001).

이러한 전송권(제18조의 2)의 신설은 인터넷 등의 컴퓨터통신이 급속하게 발전됨에 따라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에 전송권을 추가함으로써, 유·무선의 구분 없이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저작자의 이용 혜택을 받도록 하여 디지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새로운 법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홍재현 2002).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전송권이 최

근 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 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송권의 신설은 제20조의 배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저작권법 제2조 15에서 규정한 바,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이를 금지시킬 배타적 권리인 배포권을 가진다.

배포의 개념상에서 그것이 어떠한 방식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선 혹은 무선통신의 방법에 의한 배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송권의 인정은 배포권에 대한 재확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서 전송권을 신설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그 제한규정에서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과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이외의 다른 어떤 경우에도 전송권에 대한 제한은 혜용되고 있지 않다. 특히 제27조 사적이용인 경우에도 전송권이 제한되지 않음으로써 가족 혹은 이에 준하는 어떤 대상에게도 저작물의 전부 혹은 일부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통한 전달은 혜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자 권리보호와 함께 원격교육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학대 등을 위한 일방안으로서도, 저작물 공정이용의 문제는 저작권법 제1조의

규정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2 보상금 제도시행을 위한 적용 지침

디지털 환경시대를 따라 전자도서관 구축과 저작권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목표의 조화를 위하여 2003년 저작권법 개정시 “도서관 보상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서관의 보상금 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인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 저작권법상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2. 1 보상금 제도시행을 위한 기준 지침

보상금 제도는 교과용 도서에 대한 제23조의 내용과, 법정허락에 관련된 제47조 내지 제50조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기정과정에서 제28조에 의해서 보상금 제도가 새로이 추가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는 제23조를 따르되, 시행은 지정단체를 통해 다소 복잡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문화관광부장관은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고, 이 기준에 의거하여 정해진 금액을 권리

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한 점은 제23조의 원칙을 따른 것이다. 한편, 보상금의 지급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바, 대통령령에서는 지정단체의 지정 및 그 취소, 업무규정에 관하여 방송 보상금 지정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최경수 2003).

결론적으로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28조가 도서관간의 전송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등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내외 지적을 수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상응하게 일부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다(이영아 2003).

2. 2. 2 보상금의 조정내용

개정 이전의 저작권법의 내용과 현행 저작권법에서 신설 개정된 보상금제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의 항목을 살펴보면 개정전 저작권법에서는 국립대학에만 도서관 복사와 복제에 관한 면책을 주고 있었지만,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그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개정 후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범위로 확대하였다.

둘째, 열람목적이 관내전송인 경우에 개정 전에는 동시열람자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동시 열람자수를 소장부수나 이용허락을 받은 수로 제한하였다. 한편 열람목적이 관간전송인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대상의 제한이

〈표 1〉 저작권법의 조정 내용 (이영아 2003)

조정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2003.7.1 시행)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 국립도서관등 약 69개 도서관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규정 삭제 - 디지털 복제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자체 보존 및 판내·판간 열람목적 전송을 위하여 가능 <p>※ 당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p>
열람목적 판내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 열람자수 제한 없음 - 저작권 제한(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 열람자수 : 소장 부수 또는 이용허락받은 수로 제한 - 저작권 제한(무료)
열람목적 판간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제한 없음 - 저작권 제한(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매용 도서 및 발행된 지 5년 이상 경과 도서만 가능 - 저작권 제한(도서관 보상금 제도 적용)
디지털자료의 출력	- 규정 없음	- 저작권 제한(도서관 보상금 제도 적용)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예외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을 저작 재산권자로 하는 비판매용 도서에 대해 도서관 보상금 지급의무 배제 <p>※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 제외</p>
기술적 보호조치	- 복제방지, 암호조치, 변경확인 장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기술조치에 추가하여, '도서관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장치 설치' 의무화

없었고 저작권의 제한 또한 무료였으나 개정 후에는 비판매용 도서 및 발행된 지 5년 이상 경과한 도서만 가능하고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적용에 따라서 저작권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셋째,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개정 전에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적용하여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에 따라 출력과 전송의 경우에 보상금액의 기준이 마련되었다(〈표2〉 참조).

넷째, 도서관 보상금제도의 예외 규정에 있

어서 개정 전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을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비판매용도서에 대해 도서관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해서는 개정 전에는 복제방지, 암호조치, 변경확인 장치 등에 불가했으나 개정 후에는 기존의 기술조치에 추가하여 '도서관 보상금 산정을 위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상기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서, 개정 보상금

제도의 규정을 다시 분석해 보면, 복제의 구분을 디지털 복제와 아날로그 복제로 나누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도서관내 자료의 아날로그 복제(제1항)의 경우이나, 전송 받은 도서(제3항)를 아날로그 복제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도서관은 각각의 경우 중에서 1항1호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를 아날로그 복제하는 경우와 3항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을 받은 도서를 아날로그 복제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복제나 전송을 받은 주체 도서관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도서관은 제3항을 근거로 열람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1항 본문 및 5항에 의해 복제서비스는 가능하도록 풀어준 것이다. 다시 말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복제를 할 수 있기는 하되, 그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2. 2, 3 보상금 기준 및 보상금액

도서관에서의 보상금액 기준은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의 경우로 나누고, 이를 다시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지정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부장관부 고시 2003. 9호).

〈표 2〉 도서관 보상금액 기준

구 分		출 력	전 송 (전송을 위한 복제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0원)

3. 저작권보상에 대한 인식조사

3. 1 디지털 원문자료 이용에 관한 인식 조사

3. 1. 1 디지털 원문자료 이용의 만족도

디지털 원문자료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만

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응답자중 “비교적 만족하다”라고 응답한 이용자가 88명(47.1%)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순위로는 “보통 만족한다”하고 응답한 이용자가 63명(33.7%)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만족하다고 긍정적으로 응

〈표 3〉 저작권법에 대한 집단간의 만족도

구분	집단			χ^2	P
	이용자	저자	사서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0 (0.0%)	1 (0.6%)	0 (0.0%)	19.521*
	만족한다	27 (9.0%)	31(19.6%)	20(13.6%)	
	보통이다	218(72.7%)	112(70.9%)	107(72.8%)	
	다소 불만족	53(17.3%)	12 (7.6%)	19(12.9%)	
	매우 불만족	3 (1.0%)	2 (1.3%)	1 (0.7%)	

답한 이용자는 전체 응답자의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원문자료를 이용한 경험 있는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디지털 원문자료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만족의 요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원문자료의 이용시, 불만족하다고 말한 응답자 187명(54.2%)을 대상으로 그 원인

〈표 4〉 저작권법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

구 분	집 단		
	이용자	저자	사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6(26.1%)	0 (0.0%)	1 (6.3%)
체계적이지 못하다	2 (8.7%)	0 (0.0%)	3(18.8%)
처벌이 약하다	1 (4.3%)	3(30.0%)	0 (0.0%)
저작권의 인식부족	0 (0.0%)	3(30.0%)	1 (6.3%)
잘 몰라서	8(34.8%)	0 (0.0%)	0 (0.0%)
인터넷을 이용한 다운로드	3(13.0%)	0 (0.0%)	0 (0.0%)
사회전반의 잘못된 인식	1 (4.3%)	2(20.0%)	0 (0.0%)
법의 한계	2 (8.7%)	0 (0.0%)	3(18.8%)
명확하지 않다	0 (0.0%)	1(10.0%)	2(12.5%)
도서관에서의 복사	0 (0.0%)	2(20.0%)	6(37.5%)

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60명(32.1%)의 응답자가 시간상의 제약이라는 원인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2순위로는 희망하는 자료의 원문이 DB화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 응답자가 53명(28.3%)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저작권의 저촉으로서 각 도서관의 개관시간에 따라 이용시간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기타 의견으로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원문자료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컴퓨터의 사용가능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도 상당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1. 2 디지털 원문자료의 이용 효과

디지털 원문자료를 이용하면서 편리했던 점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응답자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편리성은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사람이 108명(57.8%)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상호대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구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원문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면 하면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훨씬 용이하게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하므로 가장 편리한 사항으로 지적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5> 디지털 원문자료의 이용 효과

구분	빈도
디지털 원문자료를 이용하면서 편리했던 점	직접 가지 않고도 이용 가능
	47(25.1%)
	정보검색의 편리성
	29(15.5%)
	구하기 힘든 원문 정보 제공
	별도의 저작권료 없이 무료 이용
	2 (1.1%)
	기타
	1 (0.5%)

다음 2순위로는 이용 가능한 소장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이 편리하다는 점을 응답자중 47명(25.1%)이 제시한 것으로 보아 검색과정이 효율적인 것이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소수의 의견으로도 이용자로서 구하기 어려운 원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별도의 저작권료 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원문 자료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

〈표 6〉 저작권 법규 지식에 대한 인식도 조사

구분	집단			χ^2	P
	이용자	저자	사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아는 정도	매우 잘 알고 있다	3 (1.0%)	14 (8.9%)	5 (3.4%)	58.645 0.000
	잘 알고 있다	20 (6.7%)	37(23.4%)	28(19.0%)	
	보통이다	235(78.3%)	97(61.4%)	108(73.5%)	
	모르고 있다	41(13.7%)	10 (6.3%)	6 (4.1%)	
	전혀 모르고 있다	1 (0.3%)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 법규 인식에 관한 집단별 비교 분석

3. 2. 1. 법규 지식에 대한 인지도 조사 분석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 정도에 대하여 이용자와 저자, 사서직별로 구분하여 조사된 결과는 〈표 6〉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집단별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6〉에서 나타나듯이, 3개 집단 중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저자집단으로서, 저작권 법규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거나, 그냥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중 32.3% (51명)로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서직과 이용자의 순위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비록 이용자 및 사서직 그리고 저자들의 우선 순위이기는 하지만, 모든 집단이 공히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의 인식수준이 보통수준으로 여

기고 있다는 현실이며, 반대로 저작권법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이용자집단에서만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내고 있다(〈표 6〉 참조).

3. 2. 2 저작권료 면제항목에 대한 인지도 조사

이용자들이 저작권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12개 항목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고서, 이들 중에서 저작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항목을 아는데로 모두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상기 표와 같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항목은 237명(71.4%)이 응답한 “학교의 교육목적 등에 이용될 경우”이었고, 2순위로는 220명(66.3%)이 응답한 “도서관에서 이용될 경우”, 3순위로는 210명(63.2%)이 응답한 “출처를 명시하고 이용할 경우”, 4순위로는 193명(58.1%)이 응답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이용될 경우”로 나

〈표 7〉 저작권료 면제항목에 대한 인지도분석(복수응답)

구분	빈도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재판결차에 필요해서 이용할 경우 153(46.1%)
	학교교육목적 등에 이용될 경우 237(71.4%)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보도를 위해 이용될 경우 142(42.8%)
	공개발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40(12.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에 이용될 경우 193(58.1%)
	도서관에서 이용될 경우 220(66.3%)
	시험문제를 내기 위해 이용될 경우 140(42.2%)
	점자에 의해 복제, 배포될 경우 98(29.5%)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에 이용될 경우 47(14.2%)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이용될 경우 33(9.9%)
	번역 등에 의해 이용될 경우 83(25.9%)
	출처를 명시하고 이용할 경우 210(63.2%)

타났다. 그 이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사보도를 위해 이용될 경우”와 “시험문제를 내기 위해 이용될 경우”의 순서대로 응답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제한사항의 12개 항목이 모두 체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저작권법규 적용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7〉 참조).

3. 2. 3 복사시 법규저촉성에 대한 인지도 분석

3개 집단 공히 도서관에서의 복사행위는 위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 복사행위는 무조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는 응답에도 3개 집단 공히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의 침해로 되지만,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라는 문화적·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도서관에서의 복제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해주고 있다(저작권법 제28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도서관에서의 복제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저작권법이 부여하고자 하는 경제적 보상의 인센티브가 무의미하게 되어서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로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도서관에서의 복제를 허용하면서도 그 요건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정상조 1996).

〈표 8〉 독사행위의 법규저촉성에 대한 인지도

구분	집단			χ^2	P
	이용자	저자	사서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가	무조건 저작권법 위배	70(20.3%)	50(27.5%)	33(26.8%)	12.249 0.016
	부분복사는 위배 안됨	37(10.7%)	22(13.3%)	29(14.8%)	
	도서관복사는위배안됨	191(55.4%)	79(48.2%)	79(53.0%)	
	모르겠다	47(13.6%)	18 (11.0%)	8 (5.4%)	
	기타	0 (0.0%)	0 (0.0%)	0 (0.0%)	

3. 3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인식 조사

3. 3. 1 연구실적을 이용 허락의 범위

저작집단의 연구업적이나 연구자료가 무료로 이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중 132명(80.5%)이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무료로 이용하도록 승인하겠다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저작물 창작을 위한 노력을 참작할 때에, 무료로 이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응답과 도서관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견

제시도 소수 비율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사 집단의 대상이 주로 대학교수들로서,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교육을 위한 연구 목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나타난 관대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3. 3. 2 도서관 복제에 따른 이용허락의 교육지도

사서는 저작권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매개 역할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 열람 부서에 재직중인 사서들에게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할 때, 복사할 내용의 법규 저촉성에 대한

〈표 9〉 연구실적을 이용허락의 범위

구분	빈도
연구업적이나 자료가 무료로 이용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무료 이용 허락
	132(80.5%)
	무료로 이용되는 것은 부당
	16 (9.8%)
	일반인이 이용 시 저작권료를 받음
	4 (2.4%)
	도서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협정 체결
	6 (3.7%)
	기타
	6 (3.7%)

지도나 안내를 선행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표 10〉 참조).

조사한 결과로는 응답자중 96명(64.4%)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사서직중 12명(8.1%)은 아예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도

〈표 10〉 자료 복사시 이용허락의 확인 여부

구분	빈도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할 때, 복사한 내용 확인 여부	항상 확인한다
	대충 확인한다
	어쩌다 한번 확인한다
	확인하지 않는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

서관에서 이용자들이 자료를 복사할 경우에 오
히려 사서들이 저작권의 저촉사실에 대하여 인
지를 시켜주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필
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 점은 참으로 우려할 만
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동시 현재 국내도서관에
서는 대부분의 서서직들이 과중한 업무로서 이
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저촉여부에 대해 직·

간접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일부 도서관의 사
서직 중 41명(27.4%)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용자의 복사물을 사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3. 4.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인식 조사

〈표 11〉 자료 이용시 이용요금의 지불횟수

구분	빈도
디지털 원문자료 이용 시 별도의 저작료 지불 경험	10회 이상
	7~9회 이내
	4~6회 이내
	3회 이하
	없다

3. 4. 1. 저작권 요금의 지불경험

디지털 원문자료의 이용시, 별도의 저작요금에 대한 지불경험의 조사에서는 177명 (94.7%)의 많은 사람이 한번도 요금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저작권료를 이미 지불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특이한 점은 자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디지털 원문자료를 출력할 때 저작자에게 지불하는 저작요금중에서 복사전송권관리센터로 이양되는 요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였다고 응답한

자가 나타난 사실은 자극히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된다(〈표 11〉 참조).

3. 4. 2. 저작자 권리인정에 대한 의식수준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 중에서 86명(46.0%)이 저작자의 권리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58명 (31.0%)중에는 전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인식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12〉 저작자의 권리인정에 대한 의식수준

구분	빈도
별도의 요금을 청구할 경우	전적으로 인정 58 (31.0%)
저작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인정하겠는가	부분적으로 인정 86(46.0%)
	모르겠다 20(10.7%)
	인정하지 않겠다 23(12.7%)
	기타 0 (0.0%)

3. 4. 3. 현행 저작권 이용요금에 대한 의식 조사

현행 법규상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해당되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복사5원/전송10원(A4용지 1면당)을 책정하여 200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각 집단에서는 이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13〉 참조) (윤선영 2002).

조사결과, 복사5원/전송10원의 요금에 대하여 3개집단 공히 현행 이용요금 기준에 대하여 보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자중에서 요금의 기준액이 “적정치 않다”고 응답한 이용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파악되고 있다.

〈표 13〉 현행 복사 및 전송요금의 적정도

구분	집단			χ^2	P
	이용자	저자	사서		
저작물 복사시 저작권료 지불 복사5원/전송10원 가격이 적정한가	매우 적정하다	12 (3.5%)	4 (2.4%)	0 (0.0%)	13.706 0.090
	적정하다	88(26.5%)	39(23.8%)	31(20.8%)	
	보통이다	104(30.1%)	59(36.0%)	65(43.6%)	
	적정치 않다	79(22.9%)	38(23.2%)	27(18.1%)	
	모르겠다	62(18.0%)	24(14.6%)	26(17.4%)	

이용자집단에서는 응답자중에서 79명 (22.9%)이 기준요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래도 이용자들은 복사와 전송의 요금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마찬가지로 사서의 집단에서도 27명 (18.1%)이 적정치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저자집단에서는 38명(23.2%)이 적정치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복사5원/전송10원의 가격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용자집단에서는 자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고, 저자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이해득실의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4, 4 항후 이용요금의 적정기준
앞에서 복사 및 전송요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저작권료의 적정한 이용요금을 자유응

〈표 14〉 집단간 복사 및 전송의 희망적정요금 차이분석

구분	평균±표준편차	F	P
복사	이용자	6.331	0.002
	저자		
	사서		
전송료	이용자	4.139	0.018
	저자		
	사서		

답식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표 14〉 참조)

조사 결과를 먼저 복사요금의 평균기준부터 살펴보면, 이용자의 경우는 7.86원, 저자는 26.47원, 사서는 10.80원으로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면 전송요금의 평균가격에서는 이용자집단은 10.86원, 저자집단은 32.73원, 사서집단은 13.43원으로 각각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한다면, 이용자들은 현재의 복사 및 전송요금인 5원/10원보다 오히려 높게 적정가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저자집단의 경우는, 현행 희망하는 복사 및 전송요금의 가격을 현재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중간적 입장에서의 도서관 사서들은 향후 저작권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이용자집단과 저자집단의 중간적인 가격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현행 법규상에 명시된 저작권요금의 적정가격에 대한 집단간의 견해차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는 향후 저작권료를 재조정하는데 있어서 좋은 기준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자가 제시하는 향후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원문자료에 대한 복사 및 전송요금의 적정가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금의 약 2배 가량인 10원에서 20원정도의 가격으로 재조정함이 적정하다고 평가한다.

4. 결론

4. 1 문제점과 해결방안

도서관의 디지털 원문자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용자와, 사서 및 저자별로 나누어 면밀히 조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로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해결방안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 1. 1 디지털 원문자료 이용에 관한 문제점

디지털 원문자료를 이용시 불만족요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로서는,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난 사항은 시간상의 제약의 문제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자료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였다.

디지털 원문자료는 저작권의 적용의 제약요인으로, 반드시 도서관내에서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이용시간 내에서만 가능한 원인으로 당연히 이는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불만요인과, 동시에 출력 가능한 컴퓨터의 보유대수가 한정되어 있기에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서관측에서는 이용 가능한 도서관을 확대해 나가거나 컴퓨터 보유수를 늘리거나 또는 도서관의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문제에 대하여 도서관의 개·폐관시간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이용자가 디지털 원문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어진다.

4. 1, 2 저작자의 권리인정과 이용요금의 의식에 관한 문제점

이용자는 저작자의 권리 인정에 대해서는 약 77%가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응답자중 39.0%는 원문자료 이용 시 별도의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면 꼭 필요한 자료에 한해서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중 23.0%는 아예 디지털 원문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저작권의 인식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1, 3 저작권 지식의 학습방법에 관한 문제점

지적재산권중 12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협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이러한 정보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저작권법 학습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자자신들도 본인의 연구 실적률들이 타 기관에 의해 디지털 원문자료로 구축되어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정보 사실에 대해서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43(26.3%)명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저자들은 본인의 저작물이 디지털 자료화 되어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법규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대학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교양 강좌를 개설하고, 도서관 측에서는 도서관 이용교육을 시행할 때에 저작권 교육을 포함시키는 한편 사서직들은 국가대표 도서관에서 열리는 세미나등에 참석한 이후 교육받은 내용을 다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재교육을 시켜서, 저작권의 이해는 물론 저작권의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1, 4 연구실적물 이용승인 기회에 관련된 문제점

현재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면 오른쪽 하단에 저작물 이용 허락을 동의할 수 있는 별도의 형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회도서관에서는 저작물 이용허락을 통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학문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성을 가진 경우도 아니고,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에 의한 것도 때문에, 대부분의 저자들은 이런 기회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이용허락을 승인해 주고 싶어도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의 부족은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과 협약

을 맺은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동시 링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자들이 접근하게 되는 여러 도서관이나 학회를 통해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4. 1. 5 복사 요청시 사전승인의 교육지도에 관한 문제점

이용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의 자료를 복제할 경우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법규에 대해서 인지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복사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으며, 또는 법규상의 저작 사실을 설명해 주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설명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서직들의 의식문제는 지금의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학도서관마다 여러 가지 구조적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용자와 저자들에게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법규 저축의 경우 상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1. 6 복사 및 전송요금의 적정성 조사에 따른 문제점

복사 및 전송요금과 관련한 자유응답의 조사 결과, 이용자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행 요금 기준 보다 다소 상향 조정으로 나타났으나, 저자집단의 경우에는 현행 복사 및 전송요금 가격의 3배가 훨씬 넘는 수준으로 높이기를 희망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간적 입장의 사서집단에서는 이용자집단과 저자집단의 희망요금의 중간수치를 적정요금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는 현행 복사 및 전송요금의 체계를 재분석하고, 각 집단간의 견해 차이에 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적정한 요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2 결론 및 제언

4. 2.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모든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디지털 원문자료를 통하여 현행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작권의 인식의 차이를 이용자들과 도서관 사서직 그리고 저자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집단의 경우, 디지털 원문자료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가 일반적으로 만족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자료 이용시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시간상의 제약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으며, 얻고자하는 자료의 부재 및 출력이 가능한 컴퓨터의 보유 대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복사시 법규 저축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각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값: 0.016). 3개 집단 공히 도서관에서의 복사행위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일면 복사는 무조건 법에 위배된다는 응답자도 3개 집단 모두가 26%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은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저작권 법규내용에 대한 자기평가도 조사에서는 집단별로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값: 0.000). 3개 집단 중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저자집단이 32.3%의 비율로 법규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나, 모든 집단이 공히 법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도를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자극히 염려되는 현상으로 지적된다.

4) 저작권료 면제항목에 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설문에 제시된 면제항목의 12가지를 모두 체크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4,5 개 항목에만 체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에서 제시된 통계를 참고하면 법규지식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상 법적용 내용에 대한 지식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5) 저자들의 저작물 이용허락의 정도는 응답자중 8할 이상이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허락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9.8%의 소수의견이지만 어떤 경우이든지 무료이용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도서관을 상대로 협상을 하겠다는 응답도 나타나고 있다.

6) 저작물 이용에 따른 요금징수와 관련된

저작자의 권리 인정의 정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약 77%의 비율로서 저작자의 권리를 높게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에 대한 저작권 이용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중 39.0%의 해당자들은 꼭 필요한 자료에 한해서만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응답자중 23.0%는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앞으로는 디지털 원문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7) 현행 복사 및 전송요금의 인식조사에서는 이용자와 저자집단 사이에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용자들은 권리인정은 하면서도 이용요금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시 향후 기준요금의 조정에 대해서도 상호 상반된 견해으로 제시하지만, 현행 5원/10원의 가격보다는 중간입장에서의 도서관 사서들이 제안하는 10원에서 20원 정도의 가격으로 재조정됨이 적정하다고 평가된다.

8) 저자집단의 경우, 저작물 이용승인의 경험 조사에서는 응답자중 70.7%가 본인의 연구 실적에 대해서 별도로 자유 이용을 허락해본 경험이 없으며, 자유이용 승인의 방법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창작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직접적인 기회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기도 하다.

9) 이용자가 자료복사를 요청시 사전승인의 확인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사서직들이 복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작권법의 저촉 사실을 설명해주지도 못하는 것

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설명할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 2 제언

앞으로 미래 사회 각 계층속에서 저작권법의 효율적 시행과 함께 저작권법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범국민적으로 절실히 요청되어진다.

정부에서는 범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의식의 확산을 위한 홍보 기능을 실시하도록 하며, 우리나라 저작권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협동하여, 각 신문사나 방송국을 통한 공익광고를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모든 집단에게 있어서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할수 있는 정책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각 학교 및 대학도서관 등에서는 세미나 강좌나 연수기회를 통하여 참석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특히 사서집단은 정기적으로 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서 교육의 성과로 얻어지는 결과를 통한 실무적인 부분까지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승인의 기회를 확대 시킬 수 있는 장치가 요청되어진다.

현재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저작물 이용 협조」의 기능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내

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정을 맺은 도서관에는 의무적으로 『저작물 이용 협조』에 관한 배너(Banner)를 삽입하게 하여 여러 도서관등에서 홍보를 하여 저작물의 이용이 자유롭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나 학위논문 등은 단체를 대상으로 특정한 협정관계를 맺어 저작물 이용의 협력을 받아서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완화·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작권의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저작권법의 내용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으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높은 인식을 지님으로서 스스로의 저작물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줌으로써 지식사회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희일. 2003. 『도서의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향후 발전 방안』. 서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김기태. 2000. 『뉴미디어의 기술 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윤명, 정준민. 2002.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

- 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2): 181
201.
- 김홍기, 1999,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법무
대학원.
- 송영식, 이상정, 2003, 『저작권법 개설』, 서울:
세창출판사.
- 윤선영, 2002, 도서관 정보전문직의 저작권 인
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관리연구』,
33(3): 27~43.
- 이순호, 1999, 『디지털도서관에서의 저작권문
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영아, 2003,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서관보 상금제도설명회』, 2003년 12월 10일, 서울: 국립중앙도
서관.
- 이종문, 2002,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보호 환
경평가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3):
211~236.
- 정경희, 2001,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대학원.
- 정상조, 1996,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국회도
서관보』, 1996 (12): 10~14.
- 최경수, 2003,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개정』,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홍재현, 2001, 디지털 정보의 전자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
보학회지』, 32(1): 171~200.
- Chen, Su Shing, 1995, Technologies for
Digital Library, 『Digital Libraries
Conference: Moving Forward Into
the Information Age』, Singapore:
National Computer Board.
- Groshede, F. Willem, 2001, "Copyright
Law from a User's Perspective:
Access Right for Users", *European
Intellectual Property*, 7: 321~325.
- Nimber, David, 1999, "Puzzles of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46(3): 401~465.